

지분가치 인정이 병원 M&A의 최소요건

글 · 권 중 목
가립회계법인



과연 병원 매매가 가능해지는가?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법인의 합병절차가 신설되었다. 병원간의 인수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밝힌 규정 신설의 배경이다. 최근 중소 병원 도산의 급증 등 경영악화로 인해 자구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전한 병원 구조조정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규정만으로 국내에서 병원간 M&A가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유감스럽지만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개정 의료법상 합병관련 규정에는 합병 결의 및 인가를 위한 요건, 합병 후 권리 의무의 승계 등과 같은 내용만 열거되어 있을 뿐, 병원 M&A의 주체가 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적극적으로 M&A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만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과거 사립학교들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사립학교법에 합병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합병 주체들이 합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여 합병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전철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신설된 의료법상 합병 규정은 그 내용과 구조면에서 사립학교법의 그것과 아주 유사하다.

지분가치를 인정하자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운영중인 병원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넘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사장의 지분가치를 인정해주고, 매각시 투자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속하고, 비영리법인은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등에 전액 귀속되며, 이사장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러한 법적 제약으로 인해 병원 이사장은 병원이 부도가 나서 돌려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넘길 유인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의료법인의 M&A는 그 수나 금액면에서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마 부도가 난 병원들의 경영권을 넘기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부도병원의 M&A에 있어서도 경영진 교체에 대해 음성적으로 대가가 지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M&A를 활성화시키고, 이사장직에 대한 음성적인 대가 지급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매각시점까지 병원운영을 위해 투자한 금액 중 일부라도 인수가액에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목적이 주식회사처럼 회사의 가치를 높여 주주지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장에게 돌려주는 금액은 이사장이 병원에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병원 매각시 투자액 일부를 환원해주는 것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자자의 지분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민법규정과 상반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사장이 병원에 투자한 금액의 측정, 상속 혹은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과거 과세되지 않은 상속세 혹은 증여세의 추징 문제 등 몇가지 이슈가 있으나, 이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병원 M&A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비영리의료법인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금액은 그 의료법인을 설립한 재단법인에 전액 귀속되도록 되어있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에는 전혀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최초 설

립된 재단법인은 병원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을 법인설립취지에 맞게 사용하기만 하면 되고 굳이 병원사업에 출자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병원 운영에서 손떼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병원 운영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다.

일본 역시, 비영리법인 중 출자자의 지분을 인정해주는 형태가 존재하며, 이러한 법인이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금액은 출자자에게 반환되므로, 경영이 어려운 병원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나라는 의료 및 세계상의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인병원의 출자지분 인정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접근한다면 충분히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병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병원M&A는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병원의 경영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 M&A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고, 출자자에게 투자액 일부를 환원해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단초가 될 것이다. **KHA**